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 - 1965호

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

「주택법」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나,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26일

노 원 구 청 장

1. 처분제목 :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

2.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: 붙임 참조
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
- 영업실적 미제출 (연번 1, 2, 3)
- 등록기준 미달 (실적제출시 기술자 미보유) (연번3)

4. 처분내용 : 붙임 참조

5. 처분일자 : 2026. 11. 12.

6. 처분근거

-「주택법」제4조

-「주택법」제10조

-「주택법 시행령」제15조

-「주택법 시행령」제18조 1항 [별표1] 제2호

7. 공고기간 : 2026. 11. 26. - 2026. 12. 17. (21일간)

8. 공고방법 : 게시판 및 홈페이지

9. 유의사항

- 상기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, 제27조, 「행정소송법」 제18조,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기타 궁금한 사항은 노원구청 재건축사업과(☎02-2116-393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**행정처분 미송달 내역(3개 업체)**

연번	업 체 명	대표자	주 소	처분내용	처분사유	위반법령	비고
1	민영하이빌	이○○ 외 1	서울 노원구 월계로44길 45, 지층 02호 (월계동)	경고	연보고현황 미제출	주택법 제10조	-
2	(주)엘리시아우룸	신○○ 외 1	서울 노원구 석계로 41, 101호 (월계동)	영업정지 1개월	연보고현황 미제출		1년내 같은 위반행위기 처분 (25.6.5.)
3	(주)힐탑하우스	박○○	서울 노원구 상계로35가길 18, 1층 (상계동)	영업정지 3개월	연보고현황 미제출 실태조사시 기술인, 사무실 등록기준 미달	주택법 제4조 및 제10조	-